

제386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1년4월27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49)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1)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15)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60)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51)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06)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8)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9)
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19)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01)
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19)
1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90)
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89)
1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76)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28)
1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99)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72)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1)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26)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80)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91)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70)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53)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9)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10)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28)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04)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13)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07)
3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96)
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10)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89)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51)

-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3)
-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1)
- 3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19)
- 3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4)
- 3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9)
- 3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47)

상정된 안건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249)	3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1)	3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5)	3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0) ...	3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51) ...	3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6) ...	3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8) ...	3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9) ...	3
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9)	3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1)	3
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9)	3
1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0)	3
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89)	3
1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6)	3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28)	3
1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9)	3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2) ...	3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1) ...	3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6) ...	3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0) ...	3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1) ...	3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0) ...	3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3) ...	3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9) ...	3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0) ...	3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8) ...	3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4) ...	3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3) ...	3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7) ...	3
3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6)	4
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10)	4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9)	4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1)	4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3)	4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1)	4
3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9)	4

3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4) 4
 3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9) 4
 3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47) 4

(10시07분 개의)

○소위원장 김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위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소관, 질병관리청 소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예지 의원님과 맹성규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과 내용이 유사하여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하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249)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1)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5)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0)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51)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6)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8)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9)

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9)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1)
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9)
1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0)
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89)
1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6)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28)
1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9)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2)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1)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6)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0)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1)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0)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3)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9)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0)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8)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4)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3)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7)

- 3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6)
- 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10)
-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9)
-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1)
-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3)
-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1)
- 3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9)
- 3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4)
- 3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9)
- 3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47)

○소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제부터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2배로 상향하고 니코틴 1㎖당 525원에서 1050원입니다. 담배유사제품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개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나 담배소비세는 세율도 인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결정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담배유사제품에 건강증진부담금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에 담배유사제품에

대한 부과 내용은 개정 내용은 이미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성 이거 지금 용역 나가 있어요?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성에 관한 용역이 나가 있나요, 연구용역이?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저희가 지금까지 한번 연구조사를 해서 현재는 사용에 대한 사용 중지 권고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현재 까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용호 위원 이 법안하고는 당장 관계가 되는 건 아닌데 액상형 전자담배 이게 한 2·3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방향제하고 결합해서 치명적으로 위해하다고 그래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것에 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금방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종 답변을 못 들은 상태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자담배가 위해하다 그러면 이거를 금지할 일이지 지금 세금 문제를 논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도 코인 문제 가지고 좀 논란이 있지만 ‘세금은 거두면서 자꾸 기본적으로 책임은 안 지는 정부’ 이렇게 자꾸 비판이 일부에서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일 먼저 사실 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은 세금 문제를 논하는 것보다는 우선 위해하냐 이 부분을 국민건강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당장 이 문제 여기서 제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검토한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미국 CDC가 그 당시 THC(대마유래성분)하고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 등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의한 중증 폐질

환 원인으로 추정하였으나 원인물질이 명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THC는 불검출되었으나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일부 제품에서 미량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노출이나 다른 성분과의 복합 노출 이런 위험성까지 전체 분석한 것은 아니므로 저희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단정 짓기 어려운 상태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위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인물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담배유사제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지금 소위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1페이지에 연초의 잎 외의 줄기·뿌리 니코틴 용액 또 합성니코틴용액 등으로 만들어진 공산품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호 위원 그것 액상형으로 나와 있는 제품인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성주 따로?

○고영인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고영인 위원님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고영인 위원 아니, 의견은 없고 진행해 달라고요.

○소위원장 김성주 이게 의견이 이렇게 없습니까?

○고영인 위원 예.

○소위원장 김성주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 위원 아까 이용호 위원님도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액상형 담배 위해성이나 흡입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데 니코틴 함량이 얼마 이상 되면 판매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런데 흡입량은 뭘 이야기하나요? 니코틴 흡입량을 이야기합니까?

흡입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흡입량은 뭘 이야기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니코틴 흡입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예.

○강기윤 위원 그런데 보통 흡입량은 많이 태우면 많이 빨리 갈 건데 그걸 가지고 세금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담배 연초 담배나 이와 마찬가지로……

술도 그렇잖아요? 도수가 3도짜리가 있고 5도짜리가 있고 20도짜리, 40도짜리, 50도짜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흡입, 니코틴하고 비슷하게 알코올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몸에 무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주세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만드나요?

저는 이 부분은 이게 단순하게 액상형 담배나 연초의 잎으로 한 쉐련형 담배나 어쨌든 이 부분이 확일적으로 뭔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흡연을 막기 위해서 교육지책으로 세금이라는 어떤 과세를 통해서 좀 절제하도록 하는 그런 용도가 담겨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개별소비세를 올림으로써 그것을 막아낸다는 것은 적극적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어쨌든 액상형 담배가 니코틴이 기존에 연초의 잎과 비슷하게 관리해 준다든지 그 수준이 안 되면 판매를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개별소비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지금 말씀처럼 이게 담배 사용이라든지 금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논의되는 법안에서는 개별소비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같이 인증해서 과세 범위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정책이 그런 부분을 강조해 가면서 단지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타법에서도 그걸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를 넓히는 것은 오늘 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연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유사제품에 판매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1ml당 525원으로 부과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현행?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그것은 액상형입니다.

○이용호 위원 액상형?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예, 유사담배는 아닙니다. 지금 부과대상으로……

○이용호 위원 아, 그러니까 유사제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수입이 없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 수입이 없고 지금은 액상형 담배가 그렇고.

그러면 예상되는 세수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얼마나 돼요? 왜냐하면 제가 유사제품에 실제로 소비라 그럴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보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2020년에는 44만 1000ℓ 정도 되고요. 지금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수입 예상이 연초의 앞에서 연초의 뿌리나 줄기 등으로 제조한 담배로 확대했을 때 공식적으로 기재부나 행안부, 복지부 모두 세수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8년 기준으로 추산할 때 한 110억 정도 했습니다만 20년도에 이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20년 기준으로 추산 시 한 8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용 자제 권고를 저희가 2020년에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액상형 용액 반출량 기준으로 연간 반출량을 추정하고 비과세 부분인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용액 수입량이 한 10배 정도 이런 조건을 주고 했을 때 연간 한 8억 6000만 원 정도……

○이용호 위원 세수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시기적으로는 힘든 시기인데 결국은 제품이라는 게 서로 대체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초 담배를 피우느냐, 아니면 또 액상형을 피우느냐, 혹은 유사 제품을 피우느냐 하는 것인데 정부는, 우리는 이제 건강권으로 접근하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더 건강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도 되고 또 때로는 이게 좀 싸니까 접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

에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느냐, 이렇게 소비가 많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렇게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8억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그런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 나라에서도 자제 권고라든지 금지 이런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사용량이 줄어들면 금연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담배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많은 애연가들이 세금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세금이 비싸지니까 나는 이것 안 피우겠다 이렇게 접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8억이면 적은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애연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층이 많고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가 하는 부분도 조금 정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세금의 형평성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몇 가지 궁금한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의 쉐련형 담배는 담뱃세 인상도 했고 건강증진부담금도 인상이 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었던 거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예.

○소위원장 **김성주** 그래서 그것을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두 가지입니다.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하고 또 부담률을 높여 주는 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그다음에 부담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의 개정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세금으로는 반영이 안 된다, 이렇

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만 처리하자 이런 게 정부 측 의견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예, 그게 수정의견이고 검토의견도 그렇고 저희도 여러 가지 타 법령의 결정 사항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 또 전체적으로 맞겠다 싶어서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형평을, 그러니까 보조는 맞추는 거고 만약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개소세나 지방세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담배 가격 인상은 기재부에서 개별소비세 범부처 합의에 의해서 기재부, 행안부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율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건강증진부담금을 먼저 올려 가지고 다 세제를 올리는, 그리고 역으로 가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정기 국회 때 개별소비세하고 지방세는 좀 더 검토 후에 인상 방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으로 해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 건강증진부담금도 그 레벨하고 같이 맞춰서 이번에 보류를 시키고 유사 담배로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거기서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궤를 같이하는, 기존의 추세를 똑같이 이번에 통과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 내용으로 담은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이미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일도 가급적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정부와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세금과 부담금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아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세수 목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실제로 그래 봐야 8억 정도기 때문에 크게 세수 목적은 없다, 다만 국민의 건강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올리는 것이 원래 입법 취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세법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건강증진부담금은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지금 8억 6000은 담배 유사 제품에 대한 추계치일 겁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아, 액상형 전자담배가 아니라?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지금 아직 과세가 하나도 안 됐는데 거래량을 추계해 가지고 한 것이 8억 6000억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 정도 될 것이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예.

○**소위원장 김성주** 제 질문, 그러니까 세금과 부담금의 목적이 틀린 건데 그것을 같이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게 이 입법 취지상 맞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야 금연 효과나 이런 것 볼 때는 증진부담금을 좀 인상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개별소비세법 부대의견에 보시면 세율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신력 있는 복수의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제출할 때도 합동으로 관계부처에서 연구용역을 같이 해서 제세부담금까지 같이 산정을 한 건데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법이 제외되고 이것만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논리를 좀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볼 때는 그 취지가 아무래도 건강증진 쪽에 있기는 하지만 세수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도 정부의 의견이라든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의 국민건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

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시에 급여 비용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공단의 우선징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체납 보험료 등과 급여비 간의 상계 조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 추심·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 효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런 다른 채권보다 앞서서 금액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정부도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종윤 위원** 하나만요, 이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요양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2020년 기준으로 613억 정도 체납 보험료……

○**최종윤 위원** 몇 개 기관 정도 되는데요? 체납 요양기관이 몇 개나 돼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한 3620개 정도 됩니다.

○**최종윤 위원** 예,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 개정안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7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자진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해서 부담이득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소위 때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견은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감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둘째 의견은 체납액 규모로 봤을 때는 자진신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 이 두 가지 의견을 절충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이득금

징수 감면이 자진신고에 대한 충분한 유인 장치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속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정부 측.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당초 정부에서 수용 입장이었고요. 그때 소위 논의 때 많은 위원님들이 불법행위를 동조한 의료인의 감면이 적절하냐,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나 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게 어떨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한시적이라도 도입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논의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종성 위원님.

○**이종성 위원** 제가 제안한 법안이라서 잠깐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부 측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제안한 법률이고 또 저 나름대로 타당성이 인정이, 공감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한 안인데 일단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사무장병원의 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료인들이 재정적인 열악함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개업을 못 하고 돈 많은 사무장을 끼고 개업을 하는 상태로 또 의료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배분받지 못하고 거기에 병원을 운영하는 이익은 사무장,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이 챙겨가고 의료인들은 자기 의료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급여만 취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면제·감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지만 이미 공정거래법상에 담합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제도가 인정이 돼 있고 형사법 체계에서도 플리바게닝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도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이 의료인들에 대해서 너무 불법적인 부분만 고려해서 제재를 세계 가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고발하고 폐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앞으로 사무장병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의료인이 고발을 하면 의료인은 피해를 안 입고 실질적인 운영자인, 개설자인 사무장이 재산적인 어떤 피해를 다 당하는구나라는 경각심을 또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서 법안을 제출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때 고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정춘숙 위원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정춘숙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허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의논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저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종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불법적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면허를 대여해서 그 요양기관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돈의 액수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미 일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징수를 그 액수대로 징수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주게 되면 불법행위 그냥 봐주자는 거예요.

○이종성 위원 아니, 부당한 이익을……

○정춘숙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같이, 예를 들면 특별사법경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이 되면서 이게 같이 가면 모르지만 지난번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먼저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면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봐주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고영인 위원 저도 의견……

○소위원장 김성주 예.

○고영인 위원 일단은 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말고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신고제도를 통해서 자진신고를 했던 효율성이라든가 또 그래서 그러한 불법개설을 줄이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다른 사례들이 어떤 게 있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현재 구체적 자료 가진 건 없고요. 아마 지금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취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취지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비밀보장이나 신변보호, 책임 감면, 보호조치 등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일부 책임 감면을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하는 게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효과나 실적 사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불법개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본 취지는, 이런 사무장병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가와 거기에 따른 이익 배분 이런 걸 가지고 의료의 질을 적절한 수준으로 높여 줘야 되는데 이런 사무장이 개입을 해 가지고 부당이득이 커진다면 당연히 그 병원의 의료의 질도 떨어질 것이고 또 면허대여자인 의료인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어떤 사기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합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 피해가 의료수요자, 즉 환자들에게 올 것이라 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불법개설을 막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이러한 리니언시 제도, 그러니까 담합에 의한 이러한 것들을 서로 신고제도를 둬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많이 없어질 것이냐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신고의 유인책으로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정의 차원에서 맞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저도 반대입니다. 불수용 입장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신고의 유인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부당이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내버려 두면 또 부당이득을 더 가질 수 있는데 이것보다 내가 신고함으로써 벌칙금은 안 내지만 스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또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이런 것들을 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유인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습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일단 안 걸릴 때까지 하고, 어느 정도 병원이 잘 안 된다는지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흐름이 좀 그랬을 때 딱 신고를 하고 치고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또 다른 불법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적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예.

○고영인 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암약들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제도를 안 하면 적발이 안 된다는 건데 오히려 부당이득을 감면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이러한 것들을 차라리 적발을 위한 행정역량을 더 강화하는 데 쓰여야 된다. 즉 상시팀을 개설하고 적발을 위해서 이걸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이쪽으로 우리가 예산투입을 더 해서 최대한 그런 적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시도를 먼저 해야지, 이것을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검증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하기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찬반 의견이 확연하게 좀 나뉘는데요, 복지부가 이것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나 우리 복지위나 다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을 많이 냈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추가적인 입법에 의해서 사무장병원이 어느 정도 억제 가능하다고 하면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무장병원들에 대한 조치를 좀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해보자고 하는 의견을 어떤 위원님이 지난번에 낸 것 같은데요. 한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시기, 그렇게 했을 때 실제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한 판단이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진입부터 운영이라든지 퇴출 이런 데 많이 발의를 해주시고 입법도 해 주셨고 또 발의가 지금 이렇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과 같이 논의되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는 의견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것의 여러 가지 폐해라든지 또 효과성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겠다 이걸 떠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한 3년 정도라든지 이런 걸 좀 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

가 하는 것은 개입 정도에 따라서 감면을 달리하는 걸 생각한 거고 지금은 부당이득금이 100이면 사무장이나 아니면 그 명의를 빌린 사람이나 100을 다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무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취한 부당이득금 부분만 취하기 때문에 전체 부당이득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구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의견 한번 주십시오.

○고영인 위원 그런데 한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불법구조 시스템을 계속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때 신고해서 하고 그것 없어도 또다시 개설하지요.

제가 주위에서도 좀 몇 명 봤는데 사무장 하시던 분들은 그것 맛을 한번 들이고, 하던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계속해요, 계속. 병원 안 되면 정리하고 또 차리고 이것을 계속하는 것을 제가 주위에서도 여러 명을 봤었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되도록 제도화해야지, 한시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지요? 그걸로 해 가지고 과연 검증이 제대로 될까요? 이 시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보고요.

저는 용역을 주든 아니면 행정연구를 해서 이걸 적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해서 조사팀, 수사팀들을 만들어 가지고—상시 조사팀이겠지요—이렇게 해 가지고 적발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도해 본 후에 나중에 검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춘숙 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지금 사무장병원이 환수규정 미비로 인해서 이게 전액이 환수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재량준칙을 적용해 가지고 환수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예, 환수율이……

○정춘숙 위원 그래서 이것 자체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면대한 의료인들의 부당이득금까지 깎아준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무장병원을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저는 고영인 위원님의 말씀대로 무슨

연구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더해서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특별사법경찰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져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 이런 과정의 그다음에 이 부분 얘기가, 연구된 결과를 갖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불법한 행위를 거의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통과가 안 됐거든요, 의사들이 굉장히 반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불법의사들은 자기 부당이익 취한 것 감면해 주면서 봐주고 사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반대해서 못 하고, 이게 하나도 균형이 안 맞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무장병원 근절할 수 있는 법안들이 먼저 통과돼서 운영이 되고 그러면서 연구·조사가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얘기돼야 됩니다. 어떤 것은 의사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어떤 것은 의사들을 봐주려고 깎아 주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균형이 맞지 않고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 저도 한마디만 좀……

○소위원장 김성주 예,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어차피 찬반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계속 심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불법개설 요양기관이나 혹은 사무장병원 이것 적발을 못 합니까? 돈의 흐름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감사하고 하면 못 찾아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아까 정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사법, 복지부에 한두 명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다. 있고, 저번에 확대하는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워낙 은밀하게, 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지가 문제지 사실은 철저히 감사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내면 돈의 흐름은 거의 나오거든요. 계좌이체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찾아내면 이게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는가 하는 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봐도 이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법안이고……

그래서 저는 복지부가 실제로 정말로 근절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돈의 흐름이나 모든 운영 다 들여다보면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설할 때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는 부분도 다 본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법적인 어떤 권한을 주는 그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불법 신고자에 대해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과격적으로, 징수금을 면제해 주는 정도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발견되면 주겠다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이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거나 하는 것을 우선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적극……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도 이걸 근절하자는 취지에 다 동감해 주시는 차원에서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공단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전담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 까지도 같이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는 좀 더 과학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찾아내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이용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요양기관을 개설할 것 아니에요, 새로 하는 기관도 늘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예.

○이용호 위원 그럴 때 최근에 보면 집 살 때도 다 자금출처 하듯이 그런 걸 투명하게 해서 처음부터 이게 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꼭 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행령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처음부터 진입을 못 하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법에서도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 금지한 다라든지 의료법인의 특수관계자 비율이라든지 또 개설허가 사전검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도 좀 더 그런 설립기준이나 이런 것부터 강화돼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종성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종성 위원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용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들이 없었느냐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런 담합이라든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내부고발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내부고발이 있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징수만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의료법에 의한 어떤 사법적인 처벌 그것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고 또 환수를 면제해 줘서 부당한 이득을 전혀 못 거둬들이느냐라는 것을 보면 지금도 환수율이 낮지만 이 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아예 못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의료인한테만 면제를 해 주는 거고 사무장, 실질적인 개설자, 주인한테는 징수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인하고 개설자하고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 놔서 그 사무장이 안 낼 경우에 의료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월급의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급 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어떤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징수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경감을 해 주고 또 실질적인 개설자에 대한 징수권은 그대로 남겨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되었고요.

일단 이 문제는 위원님들 다수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 등이 시행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과연 이와 같은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조치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 보고 이 법안을 다시 심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종성 위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성 위원 예.

○소위원장 김성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제3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태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총 5건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자료 1쪽을 보시겠습니다.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5건의 개정안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각 항목별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5건의 개정안의 규정 내용과 형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개정안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이와 달리 약간의 규정 방식이 다른데요. 맹성규 의원님 안은 무인화기기의 설치·이용자가 무인화기기를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개정안들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차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소극적 금지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서 서영석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을 비롯한 네 건의 개정안 방식을 채택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 서영석 의원님 안과 김예지 의원님 안에 추가 규정한 사항인데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이런 편의 내용은 단말기 설치 현황이라든가 장애인 수요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는 게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봐서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세 번째 항목, 서영석 의원님 안에서 추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무인화기기 설치 대신에 장애인의 접근·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기기 설치 비용 및 인력 배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이 개정안 내용의 취지는 편의 제공 대신에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서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마는 무인화기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인력 배치 중 양자택일 해야 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오인의 소지가 있고요.

다음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설치 주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 역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쪽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인데요.

이재정 의원님 안의 추가 규정사항입니다.

가전제품 제조자가 장애인이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이런 가전제품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유형화하기가 어려운 측면 그리

고 이런 사용상 어려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것도 역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정의견 말씀드리면요, 위에서 검토했던 신중검토 의견 사항 등은 제외하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규정을 반영해서 하되 각 개정안을 통합해서 자구를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행일에 있어서는 시행령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해서 1년 6개월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복지부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복지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규정 내용 및 형식에 있어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규정 내용 및 형식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편의의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다 규정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서영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보조인력의 제공에 있어서는 입법의 취지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이재정 의원님 안은 냉장고·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제조자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부에서 표준화된 어떤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가 진행이 될 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시행령에 있어서 1년 6개월은 통상적인 시행일이 보통 6개월입니다만 어떻게 제공할지 또 단계적으로 어떻게 늘려 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6개월의 연구기간과 추가 구체화되는 내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법안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위기 같은데요.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기술의 발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정당한 편의라고 하는 것이 AI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든 무인단말기에 가서 말로 하는 것은 장애인 액세스를 굉장히 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 법안에서 염두해 두고 있는 오프라인의 설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술의 변화에 부응해서 하는 것도 그걸로 포함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정당한 편의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래서 사실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아마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같은 것들이 보편화되고 좀 더 된다면 대통령령에다가 추가적으로 개정을 한다면 충분히 편의의 내용들은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혜영 위원** 저는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이재정 의원님 안에, 산업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가전제품 관련한 것?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아직 산업부에서 구체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조사 자체에도 아마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 우리 복지부 영역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복지부에 있어서는, 전체 표준화는 산업부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 건데요. 만약 한다면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어떤 내용이 필요할지 같이 조사를 해 놓는 것은 산업부가 만약 시작을 한다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앞서 나가는 것은,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부가 여러 가지 표준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고, 내용이 뭐가 들어갈지는 좀 더 조사를 같이하든지 그렇게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1년 6개월을 주신다면, 그런 조사 내용에 추가적으로 해서 이런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제조자들이 어떠한 편의를 줄 것인지나 또는 어떠한 내용을 할 것인지는 같이 고민을 해

났다가 좀 더 산업부가 진행이 된다면 같이 입법을 한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음식점 요새 무인주문기가……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키오스크 많 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많이 설치되고 그러는데 저 도 가 보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탄 사람의 경우에는 높아서 누를 수가 없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안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문이 불가능한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설치업자나 또는 매장 운영자가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측면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하고 시행령에다가 세세한 부분을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면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사항입니다.

3건의 개정안에 해당되는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별로 공통사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입니다.

이외에 최혜영 의원님 안은 웹사이트를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적용 대상에서 웹사이트 부분은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규정할 실익이 부족하

다고 봐서 제외하는 게 어떨까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고요.

역시 시행일은 1년 6개월로 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18쪽에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및 설계 표준 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맹성규 의원님 안인데요.

국가가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제작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이미 개정 취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할 경우에 부처 간 혼선이 우려된다는 복지부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19쪽에 보시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2항 1호에 보시면 접근성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년에 한 번씩 접근성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부처 간 혼선을 빚을 수가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총 5건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항진** 자료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 및 사용료 등 면제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장애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이러한 불편 및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따라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현재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장애인이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서 개정 된다면 장애인들이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공단에서 정보연계 방식으로 해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장애인도 편해지고 또 공단의 입장에서는 서류심사 방식에서 정보연계 방식으로 효율화되기 때문에 7억 7000만 원가량의 서류 발급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얻는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기윤 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항진** 자료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일단 사업 개요 및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5년에 지방이양사무로 전환해서 지자체의 재원으로 수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시율이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반면에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노인건강진단 사업의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취지로 보인다는 국고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비율은 보조금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실효가 있으려면 보조금 관련 법령의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2페이지 하단에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보시면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서 노인건강진단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건강진단 사업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 봤는데, 노인건강진단 사업의 경우에는 역시 국고보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근거 법령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이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법안을 내주셨는데, 법안의 취지는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재정 운용상 이것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있어 가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고 이걸 타법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가 그런 점에서 신중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좀 더 대안을 마련을, 이와 비슷한 어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재 어르신들 같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66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인 경우에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건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그런 내용 자체를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국고를 좀 더 지원을 한다면 동일한 취지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사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토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허종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허종식 위원** 정말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법을 떠나서 66세 이상 어르신들…… 이게 노인건강진단 사업이 지자체의 2.6%밖에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생애주기도 보면 37%, 그러니까 어르신들일수록 건강검진을, 건강을 제대로 챙겨 줘야 되는데 국가도 지방자치단체에 다 방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꼭 법이 아니더라도 뭔가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성 위원** 허종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자체 중의 77군데만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160군데에서는 거의 손도 안 대고 있는 사업이에요, 사실. 제가 작년 국감에도 지적을 했지만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방이양사업이라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금 국고보조를 시행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건강검진 사업은 건보공단에서 시행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66세 이상의 경우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별도로 국고를 투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종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노인건강진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과 여기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하고 다르다고 지금 해석을 해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국고를 태우고 있고 노인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국고를 못 태운다 그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잠깐 국장이 설명

을……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은성호** 담당 국장입니다.

2018년도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이 의료급여수급권자에도 들어갔는데요, 당시에 기재부에서는 똑같이 이런 부분들에 지방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를 좀, 지방이양사업 아니냐 이러면서 반대를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당시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명시적으로는 안 했지만 이번 쪽에서는 그런 부분 논리가 이번하고 똑같이 반대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대안, 예산의 부분 증액으로……

그리고 현재 64세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 사업이 단가가 적거든요. 1만 6000원밖에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한다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못 하는 혈액 측정이나 혈액 검사 같은 것 한 3만 3000원 정도 단가를 좀 추가시켜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실효성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기재부가 입장을 놓고 볼 때 빠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실효성을 인정하고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기재부에서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효성을 인정을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냈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방이양사업의 이 부분의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 건강검진이 이행이 되는 방안을 만들든지 뭔가 지금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일반 건강검진하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검사 항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거의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의 검사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를 좀 더 강하게 프레스를 해서 이 사업이 230개 시군구에서 공히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우선 행정적인 조치도 좀 필

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도 새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취지는 노인건강진단이 지자체 수가 적은 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좀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사업에 기재부를 좀 설득을 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방이양의 문제는 물론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행안부나 기재부나 계속 지방이양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일부분은 넘어가고 또 일부분은 국고로 환원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위원님 취지를 말씀을 드려서 항목에는 넣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당장은 해결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심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복지부, 잠깐 한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65세가 넘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건강검진 받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홀수연도 같으면 홀수연도에 받고……

○**소위원장 김성주** 통지가 오는데, 받으라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래서 받으시면 되고요.

○**소위원장 김성주** 65세가 넘으면 그게 없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성 위원** 아니아니, 수급권자.

○**소위원장 김성주** 아니, 수급권자 말고 일반 가입자들 경우에.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일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연도에 따라서 사무직 종사자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소위원장 김성주** 65세 이상의 경우에 그런 받으러 오라는 통지가 없냐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험의 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연도별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통지가 오는데 그런데 왜 낮은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글썽요, 그거는 좀 더……

○이종성 위원 아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통지도 안 한다니까요.

○소위원장 김성주 아니아니, 수급권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이요. 지금 수급권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이거는 수급권자고요.

○이종성 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수급권자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이거는 수급권자 얘기고요.

○소위원장 김성주 수급권자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돼 있지 않아요?

○이종성 위원 시행되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안 한다니까요.

○소위원장 김성주 지자체가 안 하는 이유가, 지방이양을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거지요? 그 이유는 뭘니까?

○강기윤 위원 희망을 안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금, 이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7개 시군구뿐이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해서 이거는 전 국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딱 한 번 66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종성 위원님 말씀처럼 이유나 이런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77개 시군구뿐이 안 해서 이런 게 하나가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설령 한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국민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검률이 낮다는 게 또 문제이고요.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이유를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저는 좀 압니다.

○강기윤 위원 차관님, 이게 수급권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잖아요. 그것도 지자체가 하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강기윤 위원 이게 77개 지자체에서 2.6%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종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종성 위원님은 지자체에다가 국고 지원을 늘려 줘라 이런 쪽 이야기거든요, 국고를 지원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일반 국민이 아니라 수급권자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 위원 이 수급권자는 자기가 희망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희망이 작아서 2.7인지 그거는 굳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항목이 별로 없고 해서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안 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좀 더 먼저 조사를 해……

○강기윤 위원 그 원인을 처방하고 전환기 건강검진과 비슷하게 이 정도 한 40%, 50% 될 수 있도록 재원이 필요한 것인지 안 그러면 건강검진 항목이 별것 아니어서 해 보나 마나 마찬가지로 든지 이런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종성 위원이 발의한 내용이 왜 이렇게 이게 남느냐, 이분들의 건강진단을 의무화해 주자 이런 쪽이거든요. 이 목적을 달성하려 그러면 방안 중에는 어떤 것이 문제인지 실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차관님, 그런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성주 예,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 생각을 해 보니까, 부시장을 해 봐서 생각이 조금 나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안내를 안 합니다. 있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맞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니까 그 안내를 해서 많이 하면 재원이 더 많이 드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재원이 더 들어가니까요……

○이종성 위원 왜냐하면 재원도 많이 들고 수급권자는 그 의료비까지 다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이 나타나면 그 의료비까지 지자체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거를 지자체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저의

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소위원장 김성주 의료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셨어요, 그것도 국고로.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당연히 진료비는 지급을 하는데요, 이종성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조기에 발견이 되면 당연히 저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건강검진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병이 발견이 되면 또 어차피 또 다른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이 되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할 그런 필요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판단을…… 좀 더 명확하게 면밀한 판단을, 파악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강기윤 위원 지자체에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감시 감독은 안 되나요, 이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저희가 독려하는 거나 이렇기는 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평가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할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이……

○최혜영 위원 아니면 3페이지에 보시면 대상자를 일반건강검진을 만 19세에서 64세로 했거든요. 이거를 풀면 어떠세요? 64세까지 하지 말고 확대를 하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이것은 항목의 차이인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항목의 차이를 결과적으로 좀 더 보완하게 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고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건강검진할 때도. 그래서 국고가 좀 더 필요해서 차별성을 없애면 그래도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지요.

○정춘숙 위원 그래서 강기윤 위원 말씀대로 복지부가, 그러니까 지금 이종성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방이양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성격의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갖고 오시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의논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초기에 건강검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후에 오히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료비를 절감하고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이나 복지부 의견들을 쫓아서 이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하는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있는 제도를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총 6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2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인데요—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실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기초연금이 현재 상태의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다른 사람과 차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 조치는 타당합니다.

다만 기초연금법 제정 당시에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직역연금의 높은 급여 수준과 국민 정서, 재정부담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책적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한 직역연금 수령방식에 따른 차별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적으로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직역연금은 잘 아시지만 연금수급액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4년에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를 하되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 퇴직연금 평균수급액 수준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19년 평균연금수급액은 공무원연금이 237만 원, 군인연금이 272만 원, 사학연금은 297만 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0년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대한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 매년 3조 원 이상의 보전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봐야 되고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 및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의 입법목적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직역연금의 급여 수준, 형평성,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토론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영인 위원님.

○고영인 위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의 급여 수준을 보면, 지급 노인기초연금이 하위 70%에 맞춰져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제외하든 안 하든 간에 하위 70%에 어차피 대부분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조사해보면?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를 들어서 14년 이후에 일시금을 받고서 그 연금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9년도에 직역연금 수령자가 총 70만 4000명 되는데요. 이 중에 퇴직일시금을 받으신 분 15만 7000명, 그다음에 07년도부터 시작된 기초노령연금 특례수급자라고 해서 14년도에 기득권을 인정한 4만 4000명 해서 총 20만 1000명이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현재 받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퇴직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고영인 위원 일시금으로 받아서 그것이 자산

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리고 10년 미만 가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고영인 위원 다른 형태로 소진이 됐다가 이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실제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 법에 의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직역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위 70%에 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통상적이면 상당 부분……

○고영인 위원 연금 70%가 기본 생활비 한 120만 원 이 정도로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대로 연금으로 받는다면 굳이 이런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뭐 있나? 뺀다 넣는다 이런 구분 자체가 필요 없다고.

저는 기본적인 소신은 제가 상임위에서 주장했듯이 하위 70%, 100% 다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사람인데 그것하고 무관하게 이것에 일단 국한해서 보면 굳이 이것을 제외할 필요는 없다는 기본 생각입니다. 내버려 두면 빠질 사람은 빠지고, 대부분 빠진다 이거지.

○허종식 위원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고영인 위원 예.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고영인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단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결국 공무원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또 받는다, 그렇게 국민들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고영인 위원 위화감을 줄 수 있냐?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래서 그런 정서 때문에 사실 그 당시 14년도에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고민을 엄청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초연금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있던 특수직역연금의 경과규정 때문에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다시 공무원연금 수급자한테 공무원연금 단 얼마를 받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입자로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종윤 위원 차관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 직역연금 받는 분 중에 수급권자가,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그렇게 되면 지금 50% 정도 받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유족연금 받지요.

○**최종윤 위원** 받는 거지요? 그것은 이것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제외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아까 일시금 받은 사람은 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10년 이하인 사람이 지금 기초연금을 받는 거고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분을 일시금 받는 사람은 수급권자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안 중에서는 일시금을 많이 받아서 기초연금 수급권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안에서 뺐는데, 연금과 일시금의 차이는 거의 3배 차이 납니다, 평균 저기 해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지금 3배 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궁박한 상황이 아니면 일시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만약에 도입하더라도 일시금을 받았다고 해서 차별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최종윤 위원** 아니, 직역연금 초기에 분할로 한 적 있었잖아요? 뭐냐면 받은 일시불로 받고 받은 연금으로 받는 형태가 대두되고 처음에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안 되는 연금액을 수령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54%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 다 포함되게 돼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지금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상자가, 우리나라가 직역연금 도입한 지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지금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이것 내가 볼 때 조사도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얼마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소득액으로 하느냐 자산기준으로 하느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복지부나 정부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노인들 같은 경우에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산기준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복지부 담당인 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확히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지금 논의가 엉터리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소위원장 김성주** 강기운 위원님.

○**강기운 위원** 차관님, 평균 공무원연금이 한 237만 원이라고 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2019년 기준으로 237만 원이고요.

○**강기운 위원** 국민연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53만 원입니다.

○**강기운 위원** 53만 원. 사학연금이 297만 원?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사학연금이 제일, 297만 원. 군인연금이 272만 원입니다.

○**강기운 위원** 그래서 이게 국민들 정서에 반한다, 국민연금은 평균 53만 원 정도고 사학연금이 나 공무원연금은 200만 원대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반대 논리 중에.

그런데 아까 고영인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소득분위 70%로 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100% 다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이와 같은,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준도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아까 최종윤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자산과 소득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법 취지거든요. 소득 수준이,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지금 현재 자산은, 집이야 다 있겠지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생활했으니까. 그런데 소득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소득도 지금 고려하는데 그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또 사학연금의 겹으로 인해서 국민들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아야 할 부분을 국가가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 정당을 초월해서 지금 기본소득을 논의할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기초연금 부분 소득분위 70% 한

다는 것도 지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직역연금이 연금을 계속 받을 때는 다른 연금 받는 사람보다 많이 받겠지요. 그렇지만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최중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역연금은, 우리가 한때는 연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부족해서 일시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시금 많이 받는 것을 장려한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일시금을 받은 사람들은 연금 못 받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하소연하는 분들은 그런 거지요. 그때 몰라서 일시금을 받고 결국은 자녀 결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받기도 하고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것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가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는 일시금도 많이 받았고 또 받으라고 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이 사람들, 특히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곤궁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금 다른, 예를 들면 연금을 계속 받았던 액수를 가지고 2019년 현재를 갖고 비교하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의견이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조사라도 해 보고 얘기라도 듣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것은 안 됩니다, 직역연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일시금 받거나 그래서 굉장히 곤궁해진 사람한테 지금 군인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포함시키는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거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노인빈곤 되는 거예요. ‘네 책임이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조사를 먼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논의 자체가 안 되니까 먼저 조사를 철저하게 해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이형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2014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2007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반적으로 연금액이 낮기도 했지만 소득·재산 조사에 기초해서 직역에 관계없이 제도를 시행했던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직역연금 수급액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재정 지원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2014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도입하면서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시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이 있고 그냥 일시금, 퇴직 일시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은 1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 퇴직하시면서 한꺼번에 받는 거고요, 퇴직 일시금은 그냥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받는 일시금들이 있습니다. 퇴직 일시금, 퇴직연금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데 지금 한 90% 정도는 퇴직연금으로 선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것은 또 구분해서, 섞어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결정을 할 때 당시에는 역시 국민들은 직역연금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14년 기초연금으로 전환 도입하면서 직역연금을 제외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즉 연금 수급자 중에 저연금 수급자들의 소득이나 생활 실태 조사 등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심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실무적 의견 드립니다.

○이용호 위원 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이 사람도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될 경우에 국민연금 받는다고 그것 깎는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기껏해야 평균 53만 원인데 그것 받는다고 기초연금 또 깎는

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곤궁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세금 줍니까? 세금으로 해 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호 위원** 자기가 낸 돈이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운영비 100억 원은 지급이 되는데요.

○**이용호 위원** 이것 예를 들면 자기가 정기적금 해 가지고 조금 받는데, 수입이 53만 원인데 거기서 기초연금 할 때 10만 원씩 까고 주면 이게 되겠어요? 이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셔서 나중에, 이걸 관계없지만 다른 쪽으로,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소위원장 김성주** 최혜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 저도 이게 직역연금이 높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14페이지 보시면 급여별 수급자 현황이 있어요. 인식 때문에 급여액 자체가 낮은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서 공무원연금자라고 공무원을 배제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셔서 저임금의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시고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소득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소득 실태조사를 해 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허종식 위원** 국민연금도 포함해서 조사를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이왕 할 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행안부나 국방부 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고 돌려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실태조사를 근거로 의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우리 위원님들 입법 취지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예를 들어서 자식 사업 잘못했다가 다 날렸다가, 그리고 실제로 극빈층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

아 봤는데요. 그런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자로도 제외되다 보니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률적으로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이니까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제도화해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강기윤 위원** 차관님,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보편적 소득 보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강기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지만 학교 무상급식 문제로 논란이 많았어요. 무상급식 할 때 예를 들면 그룹의 총수의 모 손자도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학교에서 그렇게 어떤 사람은 차등…… 나는 급식을 먹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다라는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아마 보편적 개념으로 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2014년도에 기초연금이 도입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때 어떤 정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정서 이런 걸 생각해서 이려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걸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용호 위원도 말씀했는데 정기적금 형태로 내가 부었던 국민연금을 받는데 또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을 수혜자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것도 국가가 많이 안 내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부어서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넣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을 넣어서 그것을 나중에 사후 보장받는데 국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개인 일이었다고 해서 그걸 못 받

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보편적 소득 보전 성격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긍정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위원님들 말씀 유념해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견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15쪽입니다.

김정재 의원안 등 4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보훈급여의 소득 인정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는 원칙적으로 소득 범위에 포함시키고 저소득 생계, 돌봄·간호·치료·예우 강화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부가급여는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보훈급여 전체를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3개 법률안은 소득 범위 제외 대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서 보훈급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훈급여 대상자의 노후 복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훈급여는 국가보상적 성격과 함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급여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지급목적이 동일한 측면이 있고 생활조정수당 등은 현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어 보훈대상자를 특별히 배려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포함한 것이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독립·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보훈급여에 대한 기초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관련

의원입법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보훈급여 대상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한다는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상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타 다른 급여들은 일부 제외도 시켜 주기는 합니다만 기초연금에서 소득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고려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국가유공자 보상금의 경우에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한 122만 원에서 618만 원까지,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한 317만 원, 보훈보상자의 경우에는 35만 원에서 한 222만 원 정도까지 굉장히 보상금 등의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 수준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뺄 경우에는 독립·국가유공자의 여러 종류의 유공자들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보훈처하고 다음 주부터 실무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공자들의 여러 다양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분들이 어떤 정도의 범위에서 탈락되고 포함되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 제도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있을 보훈처와의 실무 협의 등을 좀 보아 가시면서 입법에 대한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 법안을 낸 당사자로서……

조사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첫째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목숨값, 보훈의 값을 소득으로 봐서 기초연금에서 제외한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집안을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다 는 우당 이회영·이시영 형제,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됐습니다. 같은 해 이 집안 6형제는 대한민국 최고 부자,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그룹이었을 겁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1910년 12월 30일 날 열차를 타고 만주로 갑니다. 만주에 땅을 사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흥무관학교를 만듭니다. 이 신흥무관학

교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봉오동전투와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이깁니다. 이렇게 기여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 6형제가 만주로 갔을 때 열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직계 후손 70여 명, 따라다녔던 머슴 등 해서 3칸에 열차를 나눠 타고 만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대한독립에 싸웠던 이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형 이견영은 만주에서 병사했습니다. 둘째, 남양주에서 서울까지 이 사람 땅을 밟지 않으면 갈 수 없었다는 이석영, 일본군에 쫓기다 병사했습니다. 이분은 병사를 어디에서 했느냐? 상해에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는 노숙자였습니다. 두부 비지 얻어먹다가 얻어맞아 죽었다는 설도 있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셋째 철영, 병사했습니다. 넷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이분은 만주 신흥무관학교 교장선생님 하셨습니다. 일본군에 잡혀서 모진 고문 끝에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사했습니다. 다섯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초대 부통령 이시영. 이 형제들 중 유일하게 살아서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여섯째 이호영, 1933년 만주에서 일가족이 실종됐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이분 가정은 일본군에 의해서 몰살된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친손자가—기억하실 겁니다—전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입니다. 이종걸 의원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당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집안이어서 아씨, 며느리, 딸, 다 정말 교육도 잘 받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만주 가서 무엇을 했느냐? 무관학교 학생들 위해서 샅바느질했고 이분들 빨래해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돌아온 사람, 해방돼서 돌아온 사람, 이제 거지가 됐습니다. 이 집안은 대학 나온 사람도 드문드문 나왔습니다. 최고의 부잣집이었습니다.

또 한 집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상북도에 의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의성마늘 하면 잘 아시지요? 의성에는 의성 김씨라는 종갓집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서 한 집안을 기준으로 보면 의성 김씨가 가장 많습니다. 이 집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안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이 집안 후손들 중에서 대학 나온 사

람을 본 적이 없다, 80년대 넘어서 드문드문 나오더라.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선조들의 고생으로 우리는 나라를 찾았지만 이 후손들은 정말 고생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목숨값을 줌 주자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헌법을 보십시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그렇게 높이 치고 있습니다. 그거 줬던 것 뺏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우리가 한번이라도 보훈을 제대로 대접한 적 있느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강기운 위원님.

○강기운 위원 너무 엄숙해 가지고……

허종식 위원님, 독립유공자의 자손이지요?

○허종식 위원 아닙니다. 보훈가족이었습니다.

○강기운 위원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듣고 혹시 유공자의 자녀라서 이렇게 열변하는가 싶어서……

○허종식 위원 아닙니다. 보훈가족이었습니다.

○강기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차관님, 저도 대동소이한 말씀인데 차관님도 아까 설명하면서 이 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운 위원 나름대로 보훈처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 제가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허종식 위원님 이야기처럼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수당 받고 하는 부분들을 재산소득 범위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것은 피의 대가로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가혹하다, 정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훈처하고 논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한 내용들이 잘 녹아나서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정춘숙 위원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아까 국민연금

도 같이 고민해 달라 이용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줬다 뺀 기초연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일같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죽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성격은 다르지만 그 형태는 비슷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거 받으니까 그만큼 제하고 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답답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뭐 ‘안 됩니다, 중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그냥 해서는 빈곤의 문제, 절대적 빈곤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복지부에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앞에 것도 마찬가지로인데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연구 결과는 뭐다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줬다 뺀 기초연금 문제와 그다음에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훈대상자의 보상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의제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범위 내에서 빠르게 한번 의견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아마 관련해서는 또 재정 당국과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정 당국과의 협의는 협의지만 저희 복지부의 입장은 뭐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좀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법안 논의에서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형훈 국장님.

○**보건복지부연금지책국장 이형훈**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인데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은 사실은 다 아시지만 배경이 되는 게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을 하면

서 3%에 70% 소득대체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참 되다가 98년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 60%로 낮췄고 다시 2008년에 50%로 낮추면서 20년간에 걸쳐서 10%p를 40까지 낮추는 그런 제도적 변화가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려되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초기 가입자일 수도 있고요. 초반부에 했던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게 설정돼 있다라는 이런 점들이 고려돼서 감액까지 그런 제도 운영을 하게 된 거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충분히 토론을 들었고요. 복지부가 보훈처하고 협의해서 진전된 얘기들을 가져오기로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강운진 국장이 배석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발언하실 게 있나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짧게 보훈처 입장 말씀하시지요.

○**국가보훈처복지증진국장 강운진** 오늘 실은 이게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이 기초연금에서 포함되지 않는 논의는 10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종식 의원님과 강기운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께서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가지고 오늘 실은 복지부랑 큰 진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분들 독립운동하신 분들, 국가유공자분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국회 때까지 좀 빨리 우리가 정부부처 내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시간에 뜻을 모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추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복지부하고 보훈처가 빨리 실무적인 협의를 잘 마무리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강기운 위원** 차관님, 5월 달 안으로 좀 해주세요.

○**허종식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저희의 문제도 있지만 잘 아시지만 보훈처 국장님도 계시지만 결국은 또 재정 당국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한다기보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잘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

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웅 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9항까지 총 13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역학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항은 역학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어떤 벌칙 규정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해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를 추가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성만 의원님 안은 역학조사에 감염원의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허종식 의원님 안은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적 필요와 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익 침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신설하되, 즉 허종식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반응을 하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시에는 벌칙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감염병 위기 상황인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도 허종식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반응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쪽까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병원체의 확인기관 현행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현행 규정에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조직개편으로 확인기관에서 국립검역소를 삭제하고 질병대응센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질병청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수정의견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기운 위원님.

○강기운 위원 수정의견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한정하자 이랬는데 여기에 감염병 관련 주의 이상 경보가 있습니까? 경보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관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기운 위원 관심부터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보통 관심은 해외에서……

○강기운 위원 지금 어디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저희들이 지금 심각 단계입니다.

○강기운 위원 지금 심각 단계에 있어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예, 맞습니다.

○강기운 위원 지금 무슨 심각? 경계, 심각?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그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고요. 보통 관심은 해외에서 감염병이 발생되고 있을 때는 관심으로 보고요.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들어왔을 때 주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거나 완전히 팬데믹이 왔을 때 심각까지 올라가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운 위원 그런데 이게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설명을 듣는 거거든요, 어디서 감염이 됐고 누구랑 만났고. 그런데 처음에는 좀 숨기는 게 많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 지인들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조사관들은 혼란을 받습니다. 사람들도 이끌어 내고……

○**강기운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병으로 보면 그보다 더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진짜로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는 거거든, 우리 법이라는 게. 그런데 이것을 마냥 우리가 관리하기 수월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계속 만들면 그에 따르는 자유가 박탈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만사를 법으로 다 규정해 버리면, 모든 것을 걸음걸이까지 규정해 버리고 하면 얼마나 통치하기 수월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자유가 침해되면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이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감염병이 확산되고 할 때 이것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저런 법안들이 많이 제출되는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것을 법제화해서…… 이 감염병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것은 주의 이상 하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인데 이것을 조금 더 격상해서 참 엄청나게…… 그 전에 관심부터도 해야 될 것 같기는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요구했을 때, 감염병 관련해서 추적조사를 위해서 이거 할 때 지금은 또 어찌 보면 이제 자가 진단키트도 나오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관 주도의 어떤 방역 행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보조제를 통해서 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가 만들어 가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입장에 있다.

최고 큰 거는, 우리 방역의 끝판 왕은 백신이지만 이와 같은 백신 같은 부분들은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개인이 만든 것도 아니니까 국가가 해야 되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이와 같은 역학조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할 단계에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좀 아주……

지금 우리나라가 K-방역 자랑하는 중의 하나가 이와 같은 AI를 통해서 감염병 환자를 추적하고 더 막말로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이게 사실 반강제적으로 개인의 그런 신상에 대한 부분을 통제 관리했기에 이와 같은 확산을 막고 또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공익적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익이 너무 억압되고 강조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도 굉장히 우려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부분을 우리가 처음 방역지침을 할 때 그때 당시는 이것보다 더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서서히 오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검토해 나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반대하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런 법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개인의 인권에 대한 부분들, 자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우리 허종식 위원님이 발의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허종식 위원** 강기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조문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개인하고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하고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신천지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숨기고 했는데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이상한 듣지도 못한 종교단체들이 계속 집단으로 발병했는데 역시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무죄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겠다,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누구누구 왔다 갔는지 이런 방역에 협조는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기본권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역학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숨졌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감염병이 왔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다, 이것도 관심 단계가 아니고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주의 단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도 다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내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질병청, 답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례가, 이 입법이 제안되게 된 취지는 대구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도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해서 방역에 방해가 된 이런 사례를 지금 규제하기 위해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우리 허종식 위원님의 말씀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명단에 따라서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를 숨기고자 할 때 그런 게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까? 일반 어떻게 돼 있나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글썬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을 처음에…… 주의 단계라는 게 신천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자료제출이 잘못되고 거짓 진술이 됐을 때는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요.

그래서 어떤 자료제출에 있어서 저희들은 역학조사관이 굉장히 많이 시간이 투입되고요. 하나의 어떤 집단을 만일, 종교를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는 이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을 때는 그 시간 소요로 놓치는, R0가 굉장히 높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기본적인……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방해했지만 그동안에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못 했지만 이 근거를 놓음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저희들이 정확한 역학조사를 해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조여들 수 있는 그런 효과로 보시면, 개인의 인권 그것보다는……

보통 한 사람이 처음에 들어오거든요, 확진자

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로 전부 전파되거나 아니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니까 그 자료제출과 조사를 통해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건 없다는 얘기지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보호가능하다?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다만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서 그 회원이 누가 있는지 또 그 회원이 누구와 접촉했는지 밝히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 사람의 종교나 단체 이런 걸 밝힐 수는 없다, 그것을 드러내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맞습니다. EISS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했던 모든 정보는 비밀입니다. 저희들이 신용카드부터 통신까지 다 하면서 하더라도 그 정보는 개인정보법에 다 있고, 위치정보법에서 다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나갈 수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종성 위원 일단은 아까 허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천지라는 좀 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저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종교단체, 정치단체, 모든 단체의 유형들이 이제 이 법에 다 해당이 될 거고 그 활동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질병청장 그리고 시·도지사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자료제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요한 자료제출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이것을 누가 판단할 거냐, 시·도지사하고 질병청장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나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들도 있을 것 같고……

○허종식 위원 그것은 너무……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위원님, 저희들이 신

종플루 때부터 역학조사라는 데피니션(definition)이 전 세계적으로…… 역학조사라는 건 여기 정의조항을 보면 ‘감염병 환자등이’, 즉 해서 이런 역학조사의 정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에 부합되는 트레이스(trace)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더 많이 했던 게 신용카드라든가 통신을 이용한 ICT를 해서 저희들이 위치정보를 더 많이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진술이 거짓되니까. 이런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역학조사 차원에서 죽 되는 거지 저희들이 이걸 인권이나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이것에 대해서 역학이라는 건 어떤 정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트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추적하는 범위 내에서의 그 사람들의 동선이라든가 자기가 어디 속해 있던, 갔던 사실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역학을 죽 해왔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데에 활용되거나 악용될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식 위원 이게 거짓이나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만 한정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한정되고, 역학조사 딱 1개로 정해져 있고 고의적으로 거부나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이런 측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기윤 위원 그 자료가 뭐냐 이거예요, 자료 제출. 필요한 자료라 했는데,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정치집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제출 이랬는데 자료제출에 이게 어떤 규정을 명문화하는 그런…… 뭐 동선에 관련된 자료제출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두루뭉술하게 ‘자료제출’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요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차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국한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에게 이와 같은 부과금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 자료제출의 범위를, 어떤 자료를 이야기할 수 있는냐……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저희들은……

○강기윤 위원 역학조사에 국한된 부분이겠지만……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예, 맞습니다.

○강기윤 위원 역학조사, 그러니까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니까 그것도 그 안에 종교단체에서 행위를 할 때 어디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요건이 없을까 그런 거지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위원님, 그 우려는 저희들도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디를 들러 가지고 어떤 밀접접촉,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 외에……

신천지는 뭐냐 하면 이분이, 신천지가 거짓 대고 이렇게 확산이 됐으니까 우리가 자료조사 할 때 신도 명단을 알아야 밀접접촉자를 알 수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 아니라 이분이 있었을 때 같이 있던 사람을 알기 위해서…… 선후관계가 좀 그렇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우리는 동선을 통해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찾는 게 역학조사입니다. 신용카드를 하든 통신을 하든 그 주위에 접촉을 했던 사람들을 찾는 거지 나머지 의도는 저희는 없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감염병 예방법 할 때 개인정보라는 것은 위치정보 보호법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다 준용을, 다 보호를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을 어기면 저희들 공무원 자체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의 인권적인 측면보다는 역학이라는, 동선과 접촉자를 찾아내서 빨리 그것을 차단해서 역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isolation)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되는 목적이지만 다른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문답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안 내놓고 문답에 의해서는 그게 시간이 너무 지나가기 때문에 자료제출이라는 측면을, 이렇게 근거를 의원님들께서 아마 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강기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이런 역학조사라고 하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질병청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의 회원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집단감염 여부를 하기 위해

서 명단을 요구했다. 그 명단을 제출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밀접접촉한 사람들만 확인하고자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소속, 사는 지역, 직장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폐기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해 줘야 이런 입법에 대한 불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들이 정보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밀접접촉한 것 추려 내고요, 아니면 정보는 EISS에서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신천지 굉장히 나빠요. 나쁜데, 그것을 한 개인이, 중국 갔다 온 A라는 사람이 와서 신천지 교회에 가서 확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신천지가 완전히……

신천지는 사실 이게 이단,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어떤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신천지가 완전히 국민들한테 죽일 집단으로 되어 버렸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원치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정보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재단하는 쪽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떻게…… 아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인데, 그것도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신천지는 이단이니깐 빠지세요’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재단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만 요소가 있어도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또 그렇게 몰고 갈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 그런 부분이 필요는 하되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쪽의 지지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정춘숙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정춘숙 위원 강기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이 어떤 ‘필요한’ 이냐라고 하지만 그건 역학조사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처음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고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어야만 이렇게 엄청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후에 개인 정보가 분명하게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천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밀접접촉자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 내는 과정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언론에 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지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처음부터 협조하고 했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었던 건데 계속 숨기고 나니까, 나중에는 본인들도 도저히 안 되니까 여론에 밀려 가지고 사과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은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부·방해·회피하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대로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넓게 보고.

○강기운 위원 저도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앓고 있는데……

○허종식 위원 이해가 됩니다.

○강기운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처음에 그 문제가, 뭐 신천지 문제나 그다음에 광화문집회 문제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순탄하게 그런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었겠다 하는 그런 걱정,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허종식 의원도 발의하게 되고 배경이 그 신천지 건으로 해서 배경이 되고 했는데 과연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 참 이걸 반드시 이런 법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이라는 것이 한순간의 그것으로 인해서 법을 만들고 하는 쪽이 아니라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가 없을까……

정말 마지막에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규율하고 억제하는 것이, 이 법이라는 것은 억제하는 겁니다. 제재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뭘니까, 이게? 법이 없는 것이, 상식선에서 통용되는 사회가 최고 좋습니다, 법 없이.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그와 같은 충동요법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구성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틀이 이 법이거든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안에서, 범주 안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최소한의 법인데, 이렇다고 이게, 그러면 인정을 해요. 하는데, 이게 악용의 소지가 없을까 이런 것을 좀 더……

지금은 또 내가 봤을 때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이제 안 응했다가는 완전히 국민들한테 매장될 텐데’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정의거든요.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팬데믹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안 받아? 확진자가 생기는데 당신 동선 어디어디에 갔다 오고 한 자료 요청했는데 안 준다 하게 되면 아마 언론을 타게 되면 그 사람 온전하게 생활을 못 할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소외되고 그럴 텐데…… 지금은 그런 상태에 왔다, 제가 볼 때……

그랬을 때 이것을 사문화된 법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지금도 단체장이 자료 역학조사 한다고 하면 저거 안 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을까. 또 다른 개인 인권침해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악용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종식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법원에서도 법의 미비를 지적하거든요. 그리고 광주에 교회를 빙자한 무슨 학원도 있었잖아요. 요구를 해도 안 내놔요, 숨기고.

○**강기운 위원** 그런 데는 이제 안 나오겠지.

○**허종식 위원** 아니아니, 실제로 그래서 이 법의 미비를 법원으로부터 지적받으니까 안 내놓거

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딜 봐도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들어 놔서 다음에 이런 게 있음으로써 최소한 거짓으로 내거나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이런 것은 막아야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피해를 봐……

○**강기운 위원** 통제수단으로 법을 계속 만드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허종식 위원** 통제수단이 아니라 국민 보호수단으로 하는 거지요.

○**강기운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그렇게 국민들을 규약하고 제약하고 재단하기 위해서 법을 계속 만든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허종식 위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규제해야지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정춘숙 위원**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죽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 저는 기숙학원 이런 것 몰랐거든요. 그런 데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막 터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경상북도 어디서 가서 자료를 달라 이랬더니 ‘무슨 근거로 자료를 달라고 그러냐?’ 이런 게 있었으니까……

○**허종식 위원** 열방센터인가 뭐 있었어요.

○**정춘숙 위원** 강기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것은 질병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특별히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여러 가지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또 이 법의 필요에 대해서는 일부분 또 강기운 위원님도 동의하시니까 이렇게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질병청에서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신경 쓰시고 보고도 상세히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아무튼 감염병 위기의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가 통제수단이나 또는 보호수단이나에 대한 의견이 서로 나뉘는데요. 아마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부 감염원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이 필

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법취지에 대한 공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지나친 정보의 요구 또는 유출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일단 입법은 하되 질병청이 시행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잘 좀 추진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법안은 일단 처리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기윤 위원님?

○**장기윤 위원** (고개를 끄덕임)

○**소위원장 김성주** 눈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건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수정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7쪽입니다.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감염병연구소 사업 근거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성주 의원님 안은 외부 의뢰에 따른 시험·분석 근거 및 수수료 규정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신설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내용상 변경은 없고요,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자구를 정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쪽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감염병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에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출연금 지급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마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기관 등에 출연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감염병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단

체에 대한 출연금 지급 및 전문기관 지정·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역시 질병관리청이 독립기관으로 출범함에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자구수정 사항인데요.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준용하도록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시행령까지 준용하도록 개정안은 적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기윤 위원님.

○**장기윤 위원** 이 또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같은데,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이러한 것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좋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것은 민간 연구기관들이 더 활성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더해 저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연구소 같은 데도 이와 같은 백신이라든지 전염병 관련이라든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을 연구·개발하는 쪽에는 여기도 상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단.

지금 우리가 정부 주도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민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민간은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하지만 정부는 특별한 사명감 없이는 이와 같은 연구개발을 박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들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개발에 대해서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저도 연구기관에 있어 봤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 연구기관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준해서 민간 영역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추가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염병연구소는 신설 조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SKB가 이제 합성항원 백신을 개발하는데 감염병연구소는 백신개발센터에서 시험을 해 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병원체은행에서 그 병원체 기초적인 것을 해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끔요.

그래서 우선은 연구를 하고 시험·분석 근거도 있고 거기에 대해 병원체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수수료 근거라든가 활성화시키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는 R&D 쪽에서 국가가 돈을 지불해서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진흥법은 R&D법, 보건산업 진흥법이 따로 있고요.

○강기윤 위원 보건 진흥법이……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예,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신설 조직이 어떤 기능을 수행……

○강기윤 위원 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시험하고 뭐 이런 쪽……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맞습니다. 병원체 같은 것 뱅크 분양하고, 병원체 분양하고 이런 쪽에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데이터?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센터도 짓고 백신개발센터……

○강기윤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민간기업에서 다 풀로 되어 있지 않나? 이와 같은 시험기관을 이용해서 인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이런 데 대행기관이, 민간기업들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기업이 여러 가지 있으면 장비를 효율적으로 한 곳의 국가기관에서 보유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단계는 민간기업들이 다 각자들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백신개발센터 같은 경우도요 이제 이번에 좀 크게 지어서요 제일 기초적인 것 플랫폼 쪽, 우리가 수족구 같은 병 백신도 이번에 LG에 분양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에 있어서 상용화는 민간에 넘기는 것. 그러니까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민간이 돈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안 되면서 국가에 필요한 것들을 연구를 먼저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것을 주는 거고요. 상용화는 민간 보건산업 R&D 쪽으로 주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병원체은행도 조그맣게 민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병원체은행을 이번에 지어서요 민간을 위성같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질 관리를 통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간들이 수익성이 아직은 안 보여서 못 하는 위주의 연구개발을 해서 활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지금 질병청이 하려고 하는 messenger RNA 방식에 대해 새로운 백신 개발 연구는 어디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지금 NIH에서, 감염병연구소에서 RNA 백신 같은 경우도 기초, 지금 미국하고 같이 MOU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백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하에 국제백신연구소(IVI)가 국제기구로서는 서울에 있어서, 옛날에 교육부에 있던 게 저희들에게 와서 백신의 시너지가, 병원체·백신개발센터·IVI 이렇게 모이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민간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용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과기부하고도 연구용역 같이하고, 이렇게 생공연하고도 하고 있어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설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백종현 의원님 안에 보니까 그렇게 연구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기관이나 단체—민간이지요—민간에도 기금을,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이와 같은 연구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근거도 만들고 또 그 연구사업을 민간과 같이 하도록 하는 출연금 지급액 근거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로서 질병청은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강기윤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성주 예.

○강기윤 위원 지금 방금 차장님 말씀하셨는데, 국가백신개발센터가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예,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강기윤 위원 어디 산하에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NIH 산하에 있습니

다.

○강기윤 위원 NIH가 뭐예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이 있고요, 우리는 CDC 쪽 하는 거고요.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따로 독립된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감염병연구소가 속해 있습니다.

저희 질병청이 1급이 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질병청 자체의 모든 감염병의 대응을 맡고 있고요. 연구기관으로서 NIH 국립보건원……

○강기윤 위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이번에 생긴 거예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맞습니다. 직제 작년 9월에 생겼습니다.

○강기윤 위원 작년 9월에…… 이걸 직제가 어디에……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국립보건연구원(NIH)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안에 있습니다, 감염병연구소가.

○강기윤 위원 백신개발센터도 있고?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예, 맞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러면 감염병연구소도 있고?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연구소 밑에 백신센터·병원체자원은행……

위원님, 따로 한번 연구조직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러면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언제 생겼는데, 그러면 연구소가 생기고 나서 백신개발센터가 만들어졌나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아니, 그전부터 만들었던 것을 통합해서 이제 운영을……

○강기윤 위원 통합해서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백신개발센터……

○강기윤 위원 그 위에 상위 단계의 국립보건연구원 내에……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그것을 집어넣은 거지요, 이제.

○강기윤 위원 예?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백신개발센터가 감염병연구소 안에 이제 들어간 거지요. 그것을 묶어서 감염병연구소로 만들었습니다, 병원체은행이랑 다 합쳐서.

○강기윤 위원 조직도 한번 쥬 보세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예, 조직도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하나 더.

그런데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mRNA 방식이든 어떻든 기존의 백신 개발방식이든 정부가 사실 앞으로 이런 팬데믹 같은 게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답답했던 것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제약회사가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이야기 들었어. 들었는데,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간 백신, 뭐 생산방식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케파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내가 복지부에 물어봐도 모르고 질병청에 물어도 모르고 식약처에 물어도 모르고, 국내의 백신 제조사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케파가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국가가 어떤 위기 상황에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다 갖고 있지 않은데 민간기업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빨리 공급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최소한 그와 같은 케파나 현황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복지부에서 보건산업 쪽에서 백신 설비공장 같은 건 제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기윤 위원 진짜 이거 내가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간 5억 개, 생산 라인이야 더 늘리면 되기는 하겠지요, 그렇지요? 기존에 5억 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화이자, 모더나 좀 힘들겠지만 로열티를 주고 기술 제휴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판매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백신 한 개당 우리가 이런 로열티 줄게' 이러면서 판매권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안전성이 높은 걸 좀 베풀고.

미국에 뭘니까, LA인가 여행 오면 백신 그냥 맞춰준다고 공짜 패키지 해 가지고 410만 원 여행금 안에 백신 화이자 맞춰 준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이걸 보면서 정말 저는 기업가로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 되는데, 기술도 좋은데 왜 못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을 국가가 좀……

우리가 옛날에 70년도에 방위산업 국가가 기간산업 할 때 민수입니다, 민수. 그냥 일반 공작기계 만들고 이러다가 위기 시에는 대포도 만들고

총알도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돼 있는 게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저는 당연히 감염병연구소 등 백신개발센터든 이런 부분을 필요하게 최소한도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기구를 통해서, 민간영역에서 있는 현황들은 충분히 파악돼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이게 법안하고 관계없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제가 설비나 이런 것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진행하시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 조항으로서 역학조사관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의료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러한 역학조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는 못했지만 수습역학조사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 대한 지위나 권한 등을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습역학조사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념·권한·의무 등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 감염병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수정의견으로서는 이러한 수습역학조사관의 권한을 좀 명확하게 일시적인 방역 조치를 위한 것임을 명시해서 자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있는 사항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구성방식 변경입니다.

이 기구는 법상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둘 수 있고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 시에는 공무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수정의견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수습역학조사관이 된 뜻입니까?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저희들이 역학조사관 후보자를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채용을 하게 되면 2년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기본교육부터 시작해서 유행보고서 논문까지 해서 그게 수료돼야지 역학조사관입니다. 그 안에는 수습입니다, 2년 동안은 전문임기제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역학조사관은 아니거든요, 아직은요. 하지만 이번에 대규모로 채용해서 몇 백 명씩 와서 하되 일시적으로 역학조사관의 지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의…… 이번에 굉장히 많이 역학조사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그런 의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다음 항목 18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휴가 부여와 관련한 개정안들입니다.

총 6건의 개정안인데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들은 주로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없이 또는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면서 일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접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있고요 아니면 필수예방접종, 임

시예방접종 이렇게 열거하신 분도 있고 임시예방접종 이렇게 규정한 개정안도 있고요,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휴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님 안은 조건 없이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4건의 개정안은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강기윤 의원님 안은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기간은 접종일로부터 이틀을 명시하고 있는 안도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도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안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벌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칙은 전용기 의원님 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개정안은 없습니다.

특기사항은 전용기 의원님 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학생에 대한 관련 규정들까지 아울러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김원이 의원님 안은 이 법 시행 전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요. 장철민 의원님 안은 치료비, 생활지원 등 그 밖의 재정적 지원 근거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까지 두고 있고요, 강기윤 의원님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휴가를 보장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 6건의 개정안들이 들어와 있고요.

검토의견입니다. 18쪽입니다.

이런 개정안들은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취지로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요건과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방접종의 종류라든가 의무화 여부와 그 요건, 추가 재정 소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또 질병청 의견도 듣고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질병청.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저희 청에서도 굉장히 고민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백신 휴가 부여 권고를 통해서 지금 자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방접종 후에

어떤 걸로 면역반응이 있었을 때 신고하거든요. 일반부터 중증 사례부터 아나필락시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별 격차가 굉장히 큼니다. 굉장히 크고요, 이상반응 유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도, 저희들이 판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사업주에게 벌칙 등 의무를 부과하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이라든가 관계부처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지만 백신 휴가를 통해서 백신접종의 유인으로서 활성화시킨다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에서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라든가 소득이 없으신 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할까 이런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그 근거 규정을 좀 두면서 다른 법에서 활용을 해서 백신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으로 우선은 정리를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좀 듣고 더 한번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강기윤 위원 식약처는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저희들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 규정, 백신으로서 휴가를 줄 수 있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한해서 다른 법률에 다 근로기준법이든 고용부 다 걸려 있거든요, 이 대상 별로.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에서 다 할 수는 없고요. 백신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 지난번 관계부처 회의 때도 했지만 공무원들의 휴가는 인사혁신처 정부조직법으로 했고요. 근로기준법으로도 주고 고용법에도 산재법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여기서 답을 수는 없고요. 또 사정 따라 프리랜서도 계시고 파트타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강행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근거 규정을 좀 두는 게 어떤가 저희 질병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해 왔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19페이지 질병관리청 수정의견 32조의2(예방접종 휴가) 이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예, 맞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런데 일부분 맞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사업주가 없는 근로자들이 있고요. 그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사각지대인 거지요. 제가 상병수당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몸이 아프면 2~3일 쉬자, 이상반응 있으면 쉬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재정적인 이유로 또 실질적으로 생활의 문제로도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질병청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법안에 있다고 하지만 이런 법은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 사람들을 커버하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그쪽은 지금 없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셨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볼 때도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 혹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있다든지 그래서 돈을 정부가 줘서 그 돈으로 휴가를 주거나 이런 게 가능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지만 특고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라도 만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저희들이 만일 소득이 없으신 분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금액을 얼마나 보상…… 유급휴가는 자기 월급, 소득에 따라서 그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까?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7만 원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또 대상을 전부 할 거냐, 이상반응 중에서 심각할 거냐 이게 추계가 솔직히 쉽지는 않았고요. 만일 4400만 명분에서 이분들이 어떤 이상반응을 신고하게 되면 아마 모든 분들이 신고를 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그런데 그걸 빼더라도 한 7만 원 잡으면 한 7조가 넘게 소요가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두 번을 접종하시거든요, 보통 대부분이. 그리고 불편감 호소, 지금 상황에서는 한 3.5조로 되지만 아마 이게 되면 모든 분들이 신고를 하실 것 같고요. 판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일률적으로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소득원이라든가 이게 좀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적용 범위에서 논리는 맞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가야 될까……

재원 문제도, 기재부도 이것 어떤 식으로, 재원 면이 있다 보니…… 이것을 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방대본에서 예방접종을 맞는데 편차가 좀 다르더라고요, 나이대가 있어도. 타이레놀 먹고 바로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급하니까. 또 정말 아픈 나이 어린 저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은 휴가 안 쓰고 하는, 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사업주한테 그러면 유급휴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재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형평성 있게 조화롭게 정책을 저희들이 입안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고용 유지, 어떤 다른 방안을 좀 같이 강구해 보는 게, 법에서는 어떻게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춘숙 위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법안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리고 예방접종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11월까지 간다고 봤으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이게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고 어려움이 있고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잘라서 갖고 봐야 돼요.

제가 그냥 여기 예를 들면 특고 같은 경우 제일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까?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갖고 오든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사업자가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직장이나 어떻게 한 다든지 이런 안들을 갖고 와서 하나하나 의논을 해서 여기다 담아야지 안 그러면 그냥 말로만 무슨 백신 맞으면 유급휴가 줍시다,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만. 결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좋은 정책이 사실은 국민들이 끌고루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데 조건이 나쁜 사람은 계속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조건이 좋은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렵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실은 당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셔 가지고 '이게 어려워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위원님, 이걸 정말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 관계부처 활성화 방안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 사회필수인력, 보건소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번 지침도 해 보고 기업 등 민간에까지 많은 걸 권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기간이고 권고사항이었던 사항이고요. 그게 아무래도 권고사항보다는 법에 규정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된다면 대통령령 할 때 더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 하나하나 저희들이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재원 문제 관련된 것도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기윤 위원 차장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지금 백신접종 1단계는 기관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전체인구의 한 4.3%가 맞은 상태예요. 지금 2단계가 뭐냐 하면 6월 달 이후부터는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설계할 거예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예, 연령별로 그렇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런데 맞고 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이걸 뭐 그냥 그것 한 이야기입니다만 나는 어떻게 하면 안 맞을 수 있을까 이런 분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집단면역을 행사하려면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하고 나서 만약에 일반인한테 확대 나가면 이런 문제를 국가가 통제, 기관종사자들이야 여러 가지 나름대로 통제수단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맞고 나서 빈혈이 있어서 쓰러지는, 여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맞고 나서는 편안하게 한 하루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와도 좋다 이러면 백신을 우호적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면역이라는 것은 그게 스트레스를, 하고 나서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머리가 멍한데 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면역이 급속하게 떨어져서 그것이 또 다른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백신을 모든 사람이 맞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아까 정춘숙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근로자들이야 기업체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차등해서는 안 되거든. 기업체야 유급으로 하면 기업주들도 국가가 보상해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람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걸 오픈해서 많은 국민들이 혹시 백신 맞고 조그만 그게 있더라도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안심하고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유인하는 책도 되니까……

단지 아까 얘기한 재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걸 유급을 하면 아까 말마따나 어떤 사람은 유급이 1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5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1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유급이라 하면. 그래서 저도 고민해 봤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에버리지(average)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유급은 유급인데 그걸 그냥, 근로자가 몸이 아파도, 근로자는 한 시간에 10원 차이 나도 일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유급이면 마음대로 있을 수 있는데 유급이 안 된다고 하면, ‘너 5만 원 받고 유급해라’ 하면 ‘아니요, 나는 8만 원 받기 위해서, 3만 원, 2만 원 더 받기 위해서 나는 가겠어요’ 하게 되면 아까 내가 우려했던 대로 맞고 나면 여러 가지 기운이 없고 한테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또 직접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면적이 떨어져서 더 오히려 아까 그와 같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거기서 안 좋은 현상도 야기되면 백신 맞아서,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라도 그로 인해서 사망사고 된다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저는 그 측면에서 그런 부작용,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아픔이 있는 부분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는 단계 중에 하나가 이런 물리적인 보상, 유급휴가를 통해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법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심각하게, 아까 그런 어려

움이 있는 것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저희들도 휴가라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피해보상 이상반응은 30만 원 그걸 없애 버렸어요. 소액까지도 절차를 간소화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다 해 드립니다.

그런데 단지 걱정했던 게 유급휴가 부분에서 형평성을 어떻게, 휴가는 당연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어떤 분은 유급휴가가 되지만 또 소득이 없으신 분은 쉬시는 거지요, 결국 일이 없으신 분은요. 그러면 보상체계와 유급이라는 것이 가야 되는 측면에서 그걸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그래서 다른 나라 예를 봐도 그쪽에 대해서는 해 놓은 법들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7개 국가 정도지만 인구가 크게 많은 나라 중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아픈 이상반응이면 공가라든가 병가 이렇게 쓰게끔, 저희들도 피해보상 주니까 그것은 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유급휴가에서 유급을 어떤 식으로 돈이, 그걸 하는가의 문제지 저희들도 휴가를 굉장히 장려합니다. 필요성 동감을 하고요. 그냥 단순휴가고 아파서 안 가시면. 그런데 누구는 유급휴가고 누구는 그냥 이렇게 되면 문제고요.

그 대신 우리가 지금 유인구조로 했던 건 두 가지거든요. 피해조사 절차를 완전 단순화시켰고요, 30만 원 소액기준도 없애서 신고하시면 병원에 들어와서 하는 돈은 지금 다 지불하는 게 돼 있고요.

또 저희들이 예방접종증명서를 디지털화, 블록체인기술을 해 갖고 해서요, 그게 맞아 가면서 아마 또 일상생활에서의 베니핏(benefit)은 분명히, 이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던 측면이고요.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많이 해야 될 것은 소득 기준, 다른 것 지급할 때도 근로를 하시는 분의 증명이라든가 세금을 냈던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절차들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민했지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그건 절대 질병청 입장은 아니고요. 휴가도 하고 다른 유인구조도 하는데 유급휴가에 대한 적용범위라든가 이것은 단순하게, 쉽게 지금 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이렇게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법안이 입법기술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법안이에요.

○**정춘숙 위원** 법안을 보면 여기 제가 지금 잠깐 조문자료표를 봤는데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급을 주든 무급을 주든 그것은 사업주가 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았을 경우에는 꼭 유급을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 나름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고에 대해서는, 특수고용형태에 관련해서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재정을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기윤 위원님의 말씀에도 상당히 동의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4월이거든요. 그래서 1/4분기 맞았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좀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질병관리청의 수정의견 정도 갖고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이것의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월까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맞을 건데 우리가 말로는 휴가를 가야 합니다, 몸이 아프시면 쉬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조치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는 지금도 몸이 아픈 노동자들 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결론을 못 낸다 하더라도 구체안들을 마련해야 돼요. 정부에서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지요.

○**강기윤 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한번 해 볼게요. 정춘숙 위원 말도 아마 이게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질병관리청의 수정의견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이상반응 나타난 사람들만 국한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좀 어폐가 있어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접종한 사람 중에 원하는 사람 할 수 있는데 또 원하는 사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다 빼 버리고, 그러니까 이상반응 나타난 사람 또 원하는 사람 다 빼고.

그렇게 되면 ‘사업주는 감염병 예방접종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버리는 거지요.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이

것 빼고 ‘사업주는 감염병 예방접종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대상 감염병의 범위(비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하위법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설계가 아직 다 안 됐으니깐 그런 부분은 다른 별도의 규정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반응이 나타난 건 신고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도 저희들도 상관은 없고요. 비용 부분에 관련돼서도 만일 저희한테 대통령령으로 주신다 하면, 안을 만들 시간을 주신다 하면 저희들도……

○**정춘숙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주’ 이렇게 하면 주어가 사업주잖아요. 사업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허종식 위원** 그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말을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것까지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것 끝나고요, 다른 우리 것 끝나고 만들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오케이, 그렇게 하지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특수종사근로자까지만 들어가면 정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강기윤 위원** 그렇게만 조율하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조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시지요. 한번 안을 만들어서 검토해 봅시다.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시겠습니다.

의료인 등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 일반 규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

종 지원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의 권리로서 예방접종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의료인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감염병에 노출 위험이 있는 여러 직종 그리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는 현행과 같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고요.

다만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의 재정지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서도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안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치 대상 확대에 대한 규정입니다. 현행은 감염병 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그리고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출입하거나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에 추가를 해서 의료기관 방문 환자 또는 그 가족이나 동거인과 밀접접촉이 예상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이와 같은 조치는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서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 부분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대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다음 36쪽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하수, 분노 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소위 논의사항은 특정 연구방법론을 이런 기본계획 사항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당시에 계속 심사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저희도 검토의견은 같고요. 다만 하수기반감염병감시시스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 6월부터 9개월 동안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수 이것이 정말 할 수 있는지, 이게 방법론이기 때문에요, 조명희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감시시스템을 저희들이 다 해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필요시 하도록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자, 그러면 부칙까지.

○**전문위원 신항진** 부칙 개정사항은 시행일이 좀, 시행령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각각의 항목별로 공포한 날 또는 3개월 내지 6개월씩 부처와 협의해서 정해 놔줍니다. 그래서 본론에 있는 사항들이 정해지면 시행일은 지금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죽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백신, 휴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지금 제가 나가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정리를, 문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춘숙 위원님 주신 것과 강기운 위원님이 주신 것을 통합해서 바로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이 감염병예방방법은 잠깐 좀 미뤄 뒀다가 그 의견 받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하시지요.

질병관리청 소관 심사 일단 마치고요, 이따가 정리가 되면 다시 들어오시는 하시지요.

나성웅 차장님과 질병청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식약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차장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식약처 소관 법안 첫 번째 안건 의사일정 제30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생산시설 출입 권한을 명시하고 다른 조항을 준용하고 있던 조사 절차를

직접 이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농수산물 생산시설 출입 권한을 명시하여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가능하게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수정의견은 출입, 조사, 기피, 방해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식약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자료 6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해당 수산물에 대한 폐기·출하연기뿐만 아니라 해당 양식장이 다른 수산물에 대한 출하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 농산물의 폐기조치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같이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산물과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는 같은 양식장의 수산물의 경우 오염 개연성이 높다는 점과 위해 수산물 유통 판매 차단을 위해서는 폐기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별도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수정의견은 법률적 의미를 법문으로 명확화하기 위해서 자구 수정이 있었고 대집행 규정의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12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안전 관련 교육·홍보 업무 집행주체에 실제 안전관리 업무의

집행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집행 현실을 반영하는 입법 조치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2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의 승계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를 제외시키는 조치는 국민의 건강 보호 등 공익가치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의의 양수인이라도 제재 처분 승계에 대한 예외를 불인정하고 아울러 선의의 양수인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부칙 적용례를 장래효로 규정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성주** 예.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품목 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 품목 제조신고 사항 변경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유해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안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아까 1쪽에서요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선의의 양수인이라도 예외를 불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근거는 어디에서 정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제가 수정의견 냈으니까……

영업정지 사유가 영업자의 어떤 잘못된 음식이나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았을 때에, 지속될 경우에는 선의의 양수인이라도 그런 영업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의 효과는 승계돼야 된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예.

○**소위원장 김성주** 그렇게 조문도 수정이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예, 수정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2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3항부터 35항까지 3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확인검사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재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소송 전에 신속히 검사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

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1차 검사입니다—에 대한 불복사실을 해당 검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검사기관이 자기 검사에 대한 불복사실을 알아야 할 행정적 이유가 없고 이 경우에 오히려 확인검사 과정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식약처장에 직접 불복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확인검사기관이, 2차 검사기관입니다. 2차 검사기관이 시험·검사 역량이 높은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다음 수정사항은 검사 절차에 대한 준용규정 대신 해당 규정을 직접 명문화하는 수정의견을 냈으며, 다음 수정의견은 최종확인검사—3차 검사 결과입니다—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회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7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의무교육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축소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금년에 이미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법 집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하는 걸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성 위원** 지금 이게 위생교육하고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위생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이종성 위원** 보수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영양사 자격에 의한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설사 영양사나 조리사 중에 다른, 집단급식소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자들은, 그분들은 보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시는 영양사분들의 보수교육과 겹치는 부분은 있는데요, 겹치는 부분은 지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서 같음하도록, 저희 쪽의 위생교육을 받으면 같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중복 교육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한 보수교육은 시행규칙 사항입니다. 복지부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쪽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중복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원만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위원** 조정을,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위생교육을 받으면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그 조항 때문에 이게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후속 조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예, 복지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행규칙 작업에 저희들도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같음 조항 자체를 삭제하면 안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상에 언급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 숙제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숙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것을 이 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정리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시행규칙을 보완해서 입법에 대한 그 후속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정 과태료 상한액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의 법정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치하고 또 반대로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향액을 상향 조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이물신고 보고 위반은 소비자 식품 안전성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정 상한을 상향시키고 기타 사항은 정부 운영 현황을 고려해서 인하하는 개정안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 규칙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3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방금 전에 식품위생법안 과태료 상한액 조정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서 같은 인제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적으로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정의견도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동 규정도 개정 내용도 방금 전에 처리한 과태료 상한액 조정 내용과 동일합니다. 내용도 동일하고 의견도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8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해서 식품 영양성분 정보 등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주체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고 별도 수정의견도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개정안 타당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사항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아, 또 있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7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받으려는 자 포함입니다—에 대해서 행정적·기술적 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원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인센티브는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수정의견은 과태료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의 날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서 식품안전박람회, 세미나, 캠페인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적 보완 조치로서의 의미도 있고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개정안 타당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잠깐 한 말씀……

○소위원장 **김성주** 있습니까?

○최혜영 위원 예.

○소위원장 **김성주** 예, 최혜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 의견은 아니고 법안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보조금이 나오는데 행사 비용에 예산 낭비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예, 위원님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반드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사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예산 낭비 사례가 안 생기도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약처 소관 심사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김진석 차장님과 식약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병청 소관 법률 중 백신 휴가 관련 대안 의견을 다시 한번 준비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질병청이 준비가 된 거지요?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예, 지금 프린트……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하튼 1항은 ‘사업주는 이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상 반응을 뺐고요.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정춘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위 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항 및 2항에 따른 유급휴가 대상 감염병의 범위,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일단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휴가 부분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재정 당국은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감염병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9항까지 총 13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2건의 법률안 17항과 29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7항, 29항이 뭐였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조명희 의원님 안하고요, 전봉민 의원님 안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나머지 2건의 법률안, 17항과 29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기윤	고영인	김성주	백종현
이용호	이종성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전문위원	신항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 1 차 관	양성일
제 2 차 관	강도태

장애인정책국장	정충현
연금정책국장	이형훈
건강보험정책국장	김현주
보건산업정책국장	이강호
노인정책관	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진석
기획조정관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	이승용
질병관리청	
차장	나성웅
감염병정책국장	박혜경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강윤진